

의안번호	제355호
의결연월일	2021. 06. 11.

-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06. 04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 : 2021. 06. 04.
- 상 정 일 자 : 2021. 06. 11.

제270회 예산군의회(제1차정례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건설교통과장: 박영산)

가. 제안이유

-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, 도로변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
-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- “밤샘주차”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
- 시설 및 장소의 지정 (안 제3조)
 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
 -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
- 이용의 중지, 지정의 취소 (안 제4조, 안 제5조)
 - 축제,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(이용중지)
 - 사고,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지정취소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춘근)

- 「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」은 화물자동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그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○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